

2008. 12. 17. (수)

제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등 2건

심 사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 목 차 】

1.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4.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5.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6.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7.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7
8.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0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11. 1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2008. 12. 11.
- 다. 의안번호 : 제2008-4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였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 중 전상공상 등에게도 지원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형평성을 유지 및 명예를 높여줌으로써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목적조항을 간명화함(안 제1조).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 → 유공자

2)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 삭제함

3) 참전명예수당을 증액 지원함(안 제4조제1호).

- 월 1만원 → 월 3만원 내

4) 법령용어 순화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함(안 제4조제1호)

- 의거, ~의 규정에 의한 → 따라, 에 따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월 1만원에서 월 3만원 내로 하고,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전상공경, 공상공경,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제4조제1항 내용 중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 내" 을
월 "3만원" 으로 하고
- 제4조제2항 사망위로금 "15만원" 을
사망위로금 "20만원" 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신 . 구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에 따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u>유공자</u>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p>
<p>제2조(정의)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제대를 하였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p> <p>1. ~ 5. (생략)</p>	<p>제2조(정의) -----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할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p>	<p>제3조(지원대상자) ----- ----- ----- ----- ----- -----.</p>
<p>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p> <p>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u>월 3만원 내 지급</u></p> <p>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u>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u></p> <p>3. <u>군 관광지</u> 등 입장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p> <p>4. (생략)</p>	<p>제4조(지원사업) ----- -----.</p> <p>1. ----- <u>월 3만원 지급</u></p> <p>2. ----- <u>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u></p> <p>3. -----</p> <p>4. (현행과 같음)</p>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당은 매분기 익월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다만, 서식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생략)</p> <p>② 군수는 신청받는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p>	<p>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 ----- ----- -----.</p> <p>② ----- ----- ----- -----.</p> <p>③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input type="checkbox"/> 수정의견 사유</p> <p>○ 3만원 이내 지급 시 경우에 따라서 3만원 이하로 지급할 우려가 생길 경우가 있으므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p> <p>○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보상 차원에서 15만원에서 5만원을 증액하여 20만원을 지급코자 하는 것임</p>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11. 14.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2008. 12. 11.
- 다. 의안번호 : 제2008-4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주민전체에 대하여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통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조항을 간명화 함 (안 제1조, 제2조).
- 2)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신설 (안 제5조제3항).

-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편향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명시함

3)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함(안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적 편향 없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11. 25.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2008. 12. 15.
- 라. 의안번호 : 제2008-6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08. 7. 3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 5. 1 행정안전부)에 따라 정원채정기준 설정 및 정원조정을 통하여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알뜰한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총수 650명 → 645명(감 5명)
- 기능직 10급 86명 → 81명
 - 본청 : 46명 → 44명(감 2명)
 - 직속기관(보건소) : 2명 → 1명(감 1명)

- 사업소(수송대) : 15명 → 14명(감 1명)
- 읍 : 6명 → 5명(감 1명)

2) 공무원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설정(안 제3조).

○ 종류별(안 제3조제1항)

- 일반직(80% 이상), 기능직·고용직(17% 이내), 별정직·정무직(3% 이내)

○ 직급별(안 제3조제2항)

- 일반직 : 4급 이상(1% 이내), 5급(6% 이내), 6급(28% 이내), 7급(31% 이내), 8급(25% 이내), 9급(9% 이상)
- 기능직 : 6급(5% 이내), 7급(14% 이내), 8급(20% 이내), 9급(29% 이내), 10급(32% 이상)
- 연구직 : 연구관(3% 이내), 연구사(97% 이상)
- 지도직 : 지도관(8% 이내), 지도사(92% 이내)
- 별정직 : 6급 상당(70% 이내), 7급 상당(30% 이상)

3)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안 제4조).

- 본청 : 275명 → 273명(감 2명)
- 직속기관 : 123명 → 122명(보건소 감 1명)
- 사업소 : 50명 → 49명(수송대 감 1명)
- 읍 : 41명 → 40명(감 1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였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도 650명에서 645명으로 5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11. 25.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2008. 12. 15.
- 라. 의안번호 : 제2008-6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농지개량사업 등으로 농지형태는 1필지로 되어 있으나 행정구역상 2필지로 분리되어 있는 행정구역 경계에 접한 토지 등에 대하여 관할구역을 획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조문번호 변경 및 용어를 순화함(안 제2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 내지 ⇒ ~부터 ~까지 ○ 의한 ⇒ 따른

2) 별표의 규정방식 개정(안 제2조, 제3조).

- ~을 별표와(과) 같이 한다. ⇒ ~은 별표와(과) 같다.

3)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관할구역 정비(103필지 76,143m)(안 별표 1).

- 거창읍 장팔리 406-1번지의 3필지 938m²를 남상면 무촌리로 경계 조정
- 남상면 무촌리 1634번지의 1필지 37m²를 거창읍 장팔리로 경계 조정
- 남상면 무촌리 1636번지의 10필지 5,687m²를 거창읍 정장리로 경계 조정
- 마리면 율리 578번지의 6필지 5,865m²를 위천면 당산리로 경계 조정
- 가조면 장가리 715-1번지의 26필지 24,445m²를 기북면 용산리로 경계 조정
- 기북면 용산리 627-1번지의 23필지 13,654m²를 가조면 장가리로 경계 조정
- 고제면 농산리 1939번지의 11필지 15,537m²를 주상면 완대리로 경계 조정
- 가조면 대초리 6494번지의 15필지 9,980m²를 가조면 동례리로 경계 조정
- 위천면 대정리를 황산리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의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11. 14.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2008. 12. 11.
- 다. 의안번호 : 제2008-4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09년도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의 구체화와 감면 추정 제외사유를 추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목을 확대하며, 아파트형공장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를 구체화하고, 분리과세 대상인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안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 도세 감면조례와 시·군세 감면조례가 따로 운용됨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감면 및 자동차세 감면 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를 장애인용자동차로 인정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 2)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안 제11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감면→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50% 감면
- 3) 아파트형공장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 구체화(안 제12조의2제2항).
 - 현재는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수정
- 4)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안 제2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비영리사업자가 제132조제5항제14호 규정(재산세 분리과세)에 따라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 정비 → 조례 제28조제1항 삭제

5)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명확화(안 제7조제3호,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 단서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제11조제1항제2호,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제2항제2호, 제12조, 제15조의4 제3호, 제17조, 제19조, 제21조)

○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안 제7조제3호)

○ 오지개발사업 관계 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 삭제 (안 제10조제4호).

○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제1항 단서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임대주택 관계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 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정할 경우 추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인용조문 수정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안 제12조)

○ 건설교통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안 제15조의4제3호)

○ 주거용 부동산 → 주택 (안 제17조)

→ 「지방세법」 제180조(정의)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혼란 방지 및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

-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안 제19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단업무
-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안 제21조).
→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법령 및 감면대상의 명확화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에서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되는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는 감면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11. 14.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2008. 12. 11.
- 다. 의안번호 : 제2008-5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출산이 집중된 20~30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로 군내 젊은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개선하여 인구증가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적취득 지원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함.
- 경남도 자체사업인 무상보육료 지원 변경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조)
-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비 또는 신설함(안 제3조)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제1호)
 - 현행 :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자
 - 개정 : 아이를 출산한 자

- 국적취득자에 대한 전입장려 지원시책 신설에 따른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제9호)
 - “국적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자를 말한다.
- 3) 출산장려 지원 확대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엽산제 지원 신설 : 5개월분(안 제5조제3호)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안 제5조제4호)
 - 현행 :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
 - 개정 : 첫째아이 2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
- 4) 경남도 자체사업인 무상보육료 지원사업과 우리군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므로 관련항 삭제(안 제11조제3항)
- 5) 국적취득자에 대한 전입장려 지원시책 및 업무관장 부서 신설(안 제20조제9호)
 - 국적취득자에 대한 50만원 범위 내의 지원금 지원(1010추진단)
- 6) 별지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 또는 신설함
 - 정비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신설 : 별지 제4호서식(국적취득자 지원금 신청서)
- 7)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조문 띄어쓰기

- 정의는 → 뜻은/ ~(이)라 함은 → ~(이)란 /
 매→장/인 → 명 / ~의거 →~따라
- 만V(5)60세, 각V호, 셋째V이상, 되어V있고, 군V외, 범위V내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인구증가 시책지원을 위해 조례안 제5조에서 출산장려금을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던 것을 첫째아이부터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엽산제를 신설하며,

 제20조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그러나 국적취득자에 대한 50만원 범위 내의 지원금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의 산출근거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별지에서 신설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인 국적취득자 지원금 신청서는 조례안 본문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서식을 제정할 수 있는데 조문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서식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 제20조제9호와 관련된 별지의 서식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

1. ~ 3.(개정안과 같음)

4. 임산부 건강관리비 : 50만원 이내 <신설>

5. 출산장려금 : “첫째아이 2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 (다만,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을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 (다만,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으로 <수정>

6.(현행 제4호와 같음)

○ 제6조(지원대상 자격)

①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를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정>

② “제5조제4호 및 제5호” 를 “제5조제5호 및 제6호” <수정>

○ 제7조(지원방법)

1. ~ 3(현행과 같음)

4. 임산부 건강관리비는 2회 분할 지급하되 1차 지원은 임부등록 후 지급하고, 2차 지원은 군에 출생신고 후 지급한다. 다만, 임산부가 전입자인 경우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부터 출산 시까지 1개월당 5만원씩 지급한다.<신설>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 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부등록 또는 가임여성 등록 후 수령한다”를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부등록 또는 가임여성 등록을 하여야 한다.<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신·구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저출산, 이농,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군이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출산장려금”이란 부모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p> <p>2.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이란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p> <p>3. “협약업체”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p> <p>4. ~ 5. (생략)</p> <p>6. “전입세대”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p> <p>7. “귀농세대”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한 세대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 60세 이하의 세대주를 말한다.</p>	<p>제3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p> <p>3. ----- -----.</p> <p>4. ~ 5. (현행과 같음)</p> <p>6. ----- ----- -----.</p> <p>7. ----- ----- -----.</p>

개 정 안	수 정 안
<p>8. (생 략)</p> <p>9. “국적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p> <p>10. (생 략)</p>	<p>8. (현행과 같음)</p> <p>9. ----- ----- -----.</p> <p>10.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 (생 략)</p> <p>1. ~ 2. (생 략)</p> <p>3. <u>엽산제 : 5개월분</u></p> <p>4. <u>출산장려금 : 첫째아이 2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다만,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u></p> <p>5. (생 략)</p>	<p>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p> <p>4. <u>임산부 건강관리비 : 50만원 이내</u></p> <p>5. <u>출산장려금 :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다만,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 별로 지원한다.)</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6조(지원대상 자격) ① <u>제5조제1호 및 제3호까지의</u> 지원대상자는 사유 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에 한한다. <다만, 제5조제3호의 경우 가임여성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② <u>제5조제4호 및 제5호</u>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로 한다.(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이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만 거주 하여도 가능)</p>	<p>제6조(지원대상 자격) ① <u>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u> ----- ----- -----.</p> <p>② <u>제5조제5호 및 제6호</u> ----- ----- ----- ----- -----</p>

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지원방법) (생략)</p> <p>1. ~ 2. (생략)</p> <p>3. <u>엽산제는 가임여성 등록시 5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u></p> <p><u><신설></u></p> <p>4. ~ 5.(생략)</p> <p>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u>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u>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부등록 또는 가임여성 등록 후 수령한다.</p> <p>② <u>제5조제4호 및 제5호의</u> 신청·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p> <p>① ~ ② (생략)</p> <p>③ <u>출생아 건강보험료 환수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생략)</p> <p>2. <u>피보험자가 보험계약 기간 내에 타 시·군·구로 전출 시</u>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그동안 거창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u>해약환급금</u>은 거창군수입으로 귀속된다.</p>	<p>제7조(지원방법)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p> <p>4. <u>임산부 건강관리비는 2회 분할지급하되 1차 지원은 임부등록 후 지급하고, 2차 지원은 군에 출생신고 후 지급한다.</u></p> <p><u>다만, 임산부가 전입자인 경우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부터 출산시까지 1개월당 5만원씩 지급한다</u></p> <p>5. ~ 6(현행 제4호와 5호와 같음)</p> <p>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u>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u> ----- ----- ----<u>등록을 하여야 한다.</u></p> <p>② <u>제5조제5호 및 제6호의</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p>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1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은 <u>셋째 이상 자녀 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u></p> <p>②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u>만 5세까지</u> 지급한다. 다만, <u>만 5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는 취학 전</u> 까지만 지급한다.</p> <p>③ <삭 제></p>	<p>제11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 ----- ----- ----- ----- ----- -----.</p> <p>② ----- ----- ----- -----.</p> <p>③ <삭 제></p>
<p>제16조(지원대상 기준) ① <u>고등학교 학자금</u> 지원대상은 <u>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 이상 자녀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u> 다만, <u>고등학교 재학을 위하여 군 외에 일시 거주하는 학생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u></p> <p>② ~ ③ (생 략)</p>	<p>제16조(지원대상 기준) ① ----- -----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규모·절차 등을 거창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u></p>	<p>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 ----- ----- -----.</p>

개 정 안	수 정 안
1. 전입세대에 대한 30만원 범위 내의 전입 정착금 또는 기념품 지원(행정과)	1. ----- -----
2.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범위 내의 영농정착금 지원(농업기술센터)	2. ----- -----
3. 전입세대에 대한 300만원 범위 내의 빈집정비 지원금 지원(도시건축과)	3.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전입세대에 대한 50리터 20장 이내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산림환경과)	5. ----- -----
6. 전입대학생에 대한 10만원 범위 내의 장학금 지원(1010추진단) (개정 2008.7.24. 조례 제1897호 부칙)	6.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전입세대에 대한 5장 이내의 문화 예술관람권 지원(교육문화센터)	8. ----- -----
9. 국적취득자에 대한 50만원 범위 내의 지원금 지원(1010추진단)	9. ----- -----
10.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21조(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설립·운영)	제21조(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설립·운영)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의원, 기관단체·각급학교·기업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과 인구증가시책에 관심이 있는 인사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 ----- ----- ----- -----
③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 ----- -----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 출산 장려금을 첫째아이부터 지급토록 개정한 것을 개정하기 전의 안대로 지급을 하고 추가로 임산부 건강 관리비를 신설 50만원 이내 지급하여 태아의 건강과 임산부의 건강을 지켜 주고자 함.	

개 정 안	수 정 안				
<p>[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지원 신청서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p> <table border="1" data-bbox="177 477 756 568"> <tr> <td data-bbox="177 477 363 568">출생순위</td> <td data-bbox="363 477 756 568">① 첫째아이 ② 둘째아이 ③ 셋째아이 이상</td> </tr> </table> <p>「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산장려지원을 신청합니다.</p>	출생순위	① 첫째아이 ② 둘째아이 ③ 셋째아이 이상	<p>[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지원 신청서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p> <p>「거창군 인구증가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지원을 신청합니다.</p>		
출생순위	① 첫째아이 ② 둘째아이 ③ 셋째아이 이상				
<p>[별지 제2호서식]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양육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별지 제2호서식]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양육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별지 제3호서식]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신청서</p> <table border="1" data-bbox="177 1364 756 1456"> <tr> <td data-bbox="177 1364 363 1456">지원종별</td> <td data-bbox="363 1364 756 1456">셋째자녀 학자금(), 전입세대 학자금()</td> </tr> </table> <p>「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또는 제20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학자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지원종별	셋째자녀 학자금(), 전입세대 학자금()	<p>[별지 제3호서식] ()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신청서</p> <table border="1" data-bbox="815 1355 1394 1447"> <tr> <td data-bbox="815 1355 1002 1447">지원종별</td> <td data-bbox="1002 1355 1394 1447">셋째 이상 자녀 학자금(), 전입세대 학자금()</td> </tr> </table> <p>----- ----- ----- -----.</p>	지원종별	셋째 이상 자녀 학자금(), 전입세대 학자금()
지원종별	셋째자녀 학자금(), 전입세대 학자금()				
지원종별	셋째 이상 자녀 학자금(), 전입세대 학자금()				
<p>별지 제4호서식] 국적취득자 지원금 신청서 (별 첨)</p>	<p><삭제></p>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지원 신청서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

(접수번호 :)

임산부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배우자 (보호자)성명			
출생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순위	① 둘째아이 ② 셋째아이 ③ 넷째아이 이상						
주소 (전화번호)						☎ H·P		
입금 은행 및 계좌번호			(예금주)					
<p>「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지원을 신청합니다.</p> <p>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p> <table border="1" data-bbox="323 1377 585 1601"><tr><td>읍·면·장 확 인</td></tr><tr><td> </td></tr></table> <p>200 년 월 일</p> <p>거창군수 귀하</p>							읍·면·장 확 인	
읍·면·장 확 인								
※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

신청인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집:	HP:
지 원 대상자 (영유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와의 관계			의 재 자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와의 관계			의 재 자녀		
입 금 계 좌	금 용 기 관			예금주	계좌 번호	
<p>「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양육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거창군수 귀하</p>						
행 정 기 관 확 인 사 항						
확 인 내 용		확 인 자			비고	
		직	성 명	확 인		
조례 제11조제1항 적합 여부 적합(), 비적합()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11. 1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8. 11. 26.
- 라. 의안번호 : 제2008-58

2. 제안이유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시행하는 체험시설 2개소는 병곡초등학교와 월성초등학교를 거창군 교육청으로부터 임대하여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으나, 안전진단 결과 건물 노후로 구조의 보강이 필요하며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권역주민과 추진위원회에서도 건물 신축을 원하고 있어 향후 활용도를 감안 폐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체험시설을 신축
- 북상 월성계곡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거쳐 가는 관광지에서 사계절 언제든지 묵어가는 관광지로 개발(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연계추진)

3. 주요내용(취득재산의 표시)

① 매입(부지 및 건물)

(단위 : 천원)

재산명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지	수량(m ²)	공시지가/과세표준액	비고
총계				13,300	457,124	
폐교매입 및 체험시설 신축	소계			5,994	114,065	건설과 (병곡초)
	건물	북상면 병곡리 768-4번지 외 1	건물	486	81,518	
	토지	북상면 병곡리 768-4번지	학교용지	4,946	28,984	
		북상면 병곡리 768-3번지	답	562	3,563	
	소계			7,306	343,059	건설과 (월성초)
	건물	북상면 월성리1084-2번지 외1	건물	643	163,299	
	토지	북상면 월성리1084-2번지	답	53	779	
		북상면 월성리1084-3번지	도	452	3,282	
		북상면 월성리1084-4번지	학교용지	4,956	147,689	
		북상면 월성리1084-6번지	답	188	3,741	
		북상면 월성리1084-9번지	도	371	2,938	
		북상면 월성리1085-15번지	도	53	7,973	
		북상면 월성리1091-2번지	도	11	41	
	북상면 월성리1254번지	대	579	13,317		

② 신축(건물)

(단위 :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	수량(m ²)	사업비	비고
계				1,437	1,951,800	
취득 (신축)	건물	북상면 병곡리 768-4	건물	362	506,800	건설과
		북상면 월성리 1084-4	건물	675	945,000	
		북상면 월성리 1084-4	건물	400	500,000	문화관광과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폐교 매입 및 체험시설 신축안은 북상면 월성리 외 4개 리 7개 마을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7,106백만원(지원 6,994백만원<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주민부담 112백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체험관, 자연체험관, 주차장 조성, 계곡쉼터 등 월성권역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병곡초등학교 건물 및 토지 매입은 산림체험관(사업비 506,800천원)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며,
 - 월성초등학교 건물 및 토지 매입은 자연체험관(사업비 945,000천원)과 월성계곡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옥 펜션(500,000천원)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때에는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11. 1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8. 11. 26.
- 라. 의안번호 : 제2008-59

2. 제안이유

- 거창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14,000톤/일 이나, 현재 일 평균 하수유입량은 20,000톤/일 으로서 용량초과와 수질 오염 총량제 시행으로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향후, 수요증대를 대비하기 위해 환경 기초시설을 증설코자 함.
- 건물의 협소 및 노후로 벽면균열과 누수가 발생, 이전신축이 시급하여 주차공간 및 진료환경 개선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내용(취득재산의 표시)

① 매입(부지)

(단위 :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 지	수량(m ²)	공시지가/ 사업비	비고
계				14,624	86,396	
거창 하수처리장	토지	거창읍 양평리 289-1	전	962	8,465	
	“	거창읍 양평리 294	과	1,819	16,007	
	“	거창읍 양평리 295	과	926	8,158	
	“	거창읍 양평리 296-6	과	180	1,605	
	“	거창읍 양평리 160-9	임	7,454	4,427	
	“	거창읍 양평리 160-10	임	1,622	914	
마리 보건지소	“	마리면 말흘리 215-3번지 외 4필지	전	661	36,220	
모전보건 진료소	“	위천면 모동리 738-5번지	답	1,000	10,600	
				14,624	86,396	

② 신축(건물)

(단위 :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	수량(m ²)	사업비	비고
계				485	948,500	
취득 (신축)	건물	마리면 말흘리 215-3번지 외 4필지	건물	336	598,000	보건소 (마리보건지소, 모전보건진료소)
		위천면 모동리 738-5번지	건물	149	350,500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거창 하수처리장 증설 부지취득

- 거창하수처리장은 1994년 1일 10,500톤의 하수처리능력으로 준공되어 2000년 1일 3,500톤 처리능력을 증설하여 현재 1일 14,000톤 시설용량으로 가동 중에 있음.

- 합류식 하수관거에 따른 1일 유입량이 영농기인 여름철에는 21,000톤, 겨울철에는 18,000톤이 유입되고 있으므로, 4,000톤의 증설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증설예정지의 적정성 여부는 현재의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서는 여유 공간이 없으므로 거창하수처리장과 인접하여 있고, 토지효용이 적은 산 밑의 농지와 연접한 임야일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증설예정지 위치선정도 적정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날로 강화되고 있는 방류수질 기준에 맞추기 위한 고도처리 시설과 시설용량 4,000톤의 증설 부지를 확보하여 2010년 환경부에 증설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기위한 전초단계로서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하여 공유토지매입신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마리보건지소와 모전보건진료소

- 마리보건지소와 모전보건진료소의 토지 매입 및 신축안은 2009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이 낙후되고 진료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 본 사업이 완료되면 보건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